

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30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생활체육과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 운영 민간위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 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 운영을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시설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, 시설 및 자산물품 유지·관리
- 그 밖에 주민들의 체육활동 활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
- 위치 : 강남구 일원로 21
- 시설현황

구분	전용면적	주요시설	비고
지상2층	1,290.67㎡(391평)	헬스장, GX룸	
지하1층	6,926.87㎡(2096평)	수영장 / 공영주차장	수영장(1,488.14㎡) 공영주차장(187면)

마. 운영방식 : 민간위탁(자립형) ※ 예산 지원 없음

바. 민간위탁 기간 : 2026. 3. 1. ~ 2029. 2. 28. (3년)

사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자. 위치도



3. 참고사항 : 공동기본업무협약서

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에 대한 공동기본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(이하 '구청장'이라 함)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'교육장'이라 함), 서울영희초등학교장(이하 '학교장'이라 함)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1에 위치한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2006년 체결한 '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기본협약'을 변경하여 강남구 공공체육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을 '구청장'이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 시설)

- ① 대상 시설 :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
- ② 대상 시설 면적 : 3,170.79㎡
 - 지하 1층 : 1,880.12㎡ (수영장, 기계실)
 - 지상 2층 : 1,290.67㎡(체력단련장, GX룸 등)
- ③ 시설 소유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- ④ 시설 운영자 : '구청장'

제3조(시설 개선)

- ①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은 개관일 전 시행하는 시설개선 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개선 공사비는 '구청장', '교육장'이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.
 - 지하 1층(수영장 타일교체 등 리모델링), 지상 2층(노후시설 리모델링 등) : '구청장' 부담
 - 지하 1층(기계설비 교체 등), 지상 2층(냉난방 교체, 화장실 개선 등) : '교육장' 부담
- ③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의 설계·시공 등은 상호 협의하여 '교육장'이 시행한다
- ④ 시설개선 공사 사업비 지급 방법, 정산 방법 등은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이 상호 협의하여 「서울영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서」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로 한다.

제4조(운영 기간)

- ① '구청장'의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 운영은 개관일('구청장'의 운영 시작일)로부터 5년으로 하며, 그 기간 동안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'구청장'의 신청에 따른 '학교장'의 승인으로 5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시설 운영방식은 '구청장' 이 결정한다. 다만 '구청장' 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시에는 매년 연매출의 일정부분을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(체육시설) 유지·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, 교육청, 구청, 운영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'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(체육시설) 운영협의회' 를 구성·운영한다.
- ③ '학교장' 은 수업을 위해 학생의 수영 및 안전 지도 등에 대하여 '구청장'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'구청장' 은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적극 협조한다.
- ④ 제1항에서 제3항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 이 상호 협의하여 「서울영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서」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로 한다.

제6조(의무 및 책임)

- ①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 은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.
- ②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 은 시설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귀책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③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 은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시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'구청장' 은 수탁기관(운영기관)의 평가 시 학교 및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 등)

- ① 협약에서 정한 각자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해지를 그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명·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상호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- ② 제1항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는 '구청장', '교육장', '학교장' 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제9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2025년 3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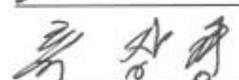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

조성명



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

류장경



서울영희초등학교장

정정숙

